성주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성주군수

2. 제정이유

○ 군민이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각종 범죄에 대한 예방은 국가(경찰)의 사무로서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각종 범죄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예방하는 것은 역부족으로, 민간단체의 범죄예방 활동을 지원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사회의 안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통한 행복한 지역을 건설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협의회 설치·구성·기능, 위원의 임기, 위촉해제, 회의를 규정함
(안 제3조 내지 제8조)

나. 실무협의회, 분과위원회, 수당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9조 내지 제11조)

다. 민간단체의 요건, 보조금 등 지원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12조 및 제13조)

라. 범죄피해자에 대한 장례비·위로금 지원 및 지급제외 사항을 규정함
(안 제14조 및 제15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1)「지방자치법」제9조
2)「청소년기본법」제8조
3)「범죄피해자보호법」제5조, 제9조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라. 비용추계 미 첨부사유 : 별첨

마. 기　　타

1) 조례(안) : 붙임과 같음

2) 입법예고결과 : 별도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국가에서 각종 범죄에 대하여 군민이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각종 범죄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예방하는 것은 역부족임으로, 범죄예방 활동 및 아동·청소년을 보호·선도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사회의 안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통하여 행복한 성주를 만들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 자치입법 입안 심사 기준에 합당함으로 본 조례를 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